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도입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고

2021.03.3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각 운영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의 시행(2021. 4. 1.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도입을 포함하여, 2021. 4. 1. 시행을 앞 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주요 변화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도입 배경

개정 전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규모 이상 취급하는 자는 이와 별개로 5년 단위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할 의무도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i)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간 중복 또는 대체될 수 있는 내용이 상당하고(약 47%), (ii) 화학사고의 예방(장외평가) 제도와 대응(위해관리) 제도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하나의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통합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

**유해화학물질 중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 및 해당 물질의 취급시설에 관한 정보, 관련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체계 등을 담은 보고서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

(1) 화학사고예방계획 도입 등에 따른 주요 변화

개정 전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 부담, 각각 심사 진행	2개 서류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 제출서류 감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60일 → 30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취급량과 무관하게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시설은 제출 면제
유해물질 상하차 작업 시 화학물질관리자가 직접 참여할 의무 부담 → 동시 다발적 작업 진행 시 작업에 장시간 소요	관리자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참여 가능 → 현장에서 유연한 안전관리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시 일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든 내용을 재작성하여 도급 신고	도급신고 변경 규정 신설, 변경된 사항만 작성하여 신고 가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정기·수시검사 실시	연구실과 학교시설은 정기·수시 검사대상 면제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의무 차등화

분류	개정 전	개정 후
1군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 상위 규정 수량 이상 취급 사업장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1군용)
2군 유해화학물질 상위·하위 규정 수량 취급 사업장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2군용, 1군용에서 외부 비상대응계획 제외)
3군 유해화학물질 하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 임시 사용시설 등	(간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면제

(3) 개정안의 주요 변화

분류	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직무 변경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로 변경)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의 범위 변경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에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담당자로 변경

[3] 시사점

곧 시행을 앞 둔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사업장의 관련 서류 작성 및 심사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고, 현장 운영의 어려움을 법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각 사업장이 실질적인 화학사고예방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화학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각 기업별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구성원

정수용

변호사

02-316-4345

syjung@shinkim.com

류재욱

변호사

02-316-1635

jwryu@shinkim.com

김규민

변호사

02-316-4412

gmkim@shinkim.com

백인혁

변호사

02-316-4130

ihbaek@shinkim.com